

적극적 시민참여활동을 위한 Third Party Policing의 도입방안

On Methods for Activating Third Party Policing for Enhancing Citizen Participation in Policing

김동복*, 김성환**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Dong-Bok Kim(packdb@nambu.ac.kr)*, Sung-Hwan Kim(ndssn@naver.com)**

요약

범죄가 다양화, 지능화 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활동이 강조됨에 따라 경찰활동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사건 지향적 경찰활동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효과성이 인정되면서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외부를 통제하는 게이트드 커뮤니티의 확산에 대응하는 경찰활동의 필요성과 게이트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의 확산에 대응하는 경찰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Third Party Policing(TPP)의 도입·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TPP의 활용을 위해 운영과정의 매뉴얼화, TPP를 위한 전담팀 구성, 시민과 경찰조직의 의식전환, 현실적인 동기부여 방안 등을 강구는 것이 본 연구의 초점이다.

■ 중심어 : 제3자 경찰활동 | 시민참여 | 범죄통제 | 게이트드 커뮤니티 |

Abstract

A participating civilian in the policing is become very important issue and strongly encouraged since variety and intelligent crimes have occurred. Moreover, necessity of invigorates of Problem-Oriented Policing has been emphasized in Korea because the effects of the Problem-Oriented Policing in the Case-Oriented Policing had been proved. Lastly, practical use of the Third Party Policing (TPP) is a main purpose to deal with spreading of the Gated community, which controls the outside. To utilizing the Third Party Policing in Korea, several solutions are suggested such as making the manual of operation process, organizing task force team for TPP (the Third Party Policing), changing the sense of civilian and police organization and realistic way to motivating.

■ keyword : | Third Party Policing | Participating Civilian | Crime Control | Gated Community |

I. 서론

범죄의 양상이 점점 다양화, 첨단화 되면서 더 이상 경찰의 치안활동만으로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로 인해 지역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같은 시민참여를 중요시하는 활동들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찰도 이를 반영하여 민간자율방범활동, 시민경찰학교 등의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경찰학교는 치안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경찰활동의 체험에 가까우며

실질적으로 치안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율방법활동은 시민들이 대부분 생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참여인원이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경찰활동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며 참여가 부족하므로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범죄의 개별적 대응을 넘어 문제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이 대두되면서 경찰은 이를 위해 정보수집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경찰활동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공기관과 사설기관 혹은 개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4].

최근에 건설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원룸 같은 거주용 건물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분 단지나 건물의 출입구를 통제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보안을 위해 건물 내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주지역과 상업지역 등에서의 건물에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게이트를 통해 외부인과 외부차량의 출입 통제, 그리고 울타리를 통한 커뮤니티의 영역성을 확보하는 공동체를 게이트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라고 한다. 이들 건축물들은 고립되어 그들만의 문화와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전국의 대도시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3][7]. 게이트드커뮤니티의 확산으로 건물 내부의 활동에 대하여 외부에서 알기 힘들다. 경찰도 그 건물 내에서 어떤 위법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그러므로 게이트드 커뮤니티 내에서 위법적인 활동이 있을 경우 경찰에게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며,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특히 게이트드 커뮤니티의 확산으로 내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이 제3자, 즉 평범한 시민(비비행자)들로 하여금 일상적 활동의 범위에서 벗어나 무질서를 간접적으로 최소화하고 범죄발생가능성을 줄이도록 고안된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고 강제하는 활동을 하는 Third Party Policing(TPP)의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적극적 시민참여의 의의

1.1 적극적 시민참여의 개념

시민참여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범위와 방법이 다르다. 최종술[8]은 시민참여를 전통적 시민참여와 적극적 시민참여로 나누었다. 전통적 시민참여는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적극적 시민은 공동생산과 협동생산으로의 참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참여를 강조한다. 적극적 시민참여로는 휘태커(G. P. Whitaker)의 공동생산이론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일반시민, 특히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8].

대부분의 행정에서 말하는 시민참여 방안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소극적인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경찰분야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철학의 도입으로 인한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치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생산으로 보므로 경찰학 분야에서는 공동생산의 의미도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시민참여를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표현적 참여와 개인적,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생산으로의 도구적 참여를 포함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1.2 경찰활동에서의 시민참여의 필요성

첫째,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시민이 경찰활동의 참여에 대한 무관심은 범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경찰활동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는 반대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정도가 클 경우, 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인지, 이웃사회의 번영, 미래 경찰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13].

둘째, 부족한 경찰력의 지원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경찰인력이 부족한 국가 중의 하나로 이로 인한 치안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인력인 전·의경이 폐지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인력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죄가 다양화, 첨단화, 고도화

되면서 경찰의 인력만으로 치안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경찰의 시민참여는 열악한 치안 환경을 협동하여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 TPP의 의의

2.1 TPP의 개념

현대의 경찰활동의 주요한 부분은 범죄를 통제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개인, 단체, 조직과 협력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Third Party Policing(제3자 경찰활동:TPP)은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집주인, 건물 감독관, 환경단속반, 지역사회 단체, 보험회사, 지방공무원 등의 범죄자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경찰활동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경찰이 제3자, 즉 평범한 비비행자들로 하여금 일상적 활동의 범위에서 벗어나 무질서를 간접적으로 최소화하고 범죄 발생가능성을 줄이도록 고안된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고 강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시민참여의 유형 중 적극적 개인활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TPP는 범죄와 무질서의 기회를 줄이기 위해 장소에 대한 감시를 강조하고 이에 강제력을 사용하게 된다. 물론 외향적으로나 언어상으로 자발적 협력을 강조하지만 경찰은 제3자(불법을 조장하는 상황이나 장소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강제를 행사하고, 때로는 제재와 제재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점 주인이나 방치된 건물의 소유주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TPP의 형태는 다양하나 대부분은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3자의 도움을 얻기 위해 강제하고 설득하는 형태이다.

TPP의 형태는 다양하다. 형태의 대부분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프로그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를 강제하거나 설득하는 형태를 가진다. 하지만 오클랜드의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Beat Health Program은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적용되도록 만든 하나의 독립된 경찰활동 프로그램의 형태를 띤 경우도 있다[2].

2.2 TPP의 목적

2.2.1 범죄예방

TPP 활동은 범죄예방과 범죄통제의 두 가지 주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범죄예방측면에서 경찰은 범죄문제의 예상과 감소에 대해 노력해야 하며 범죄문제의 발전과 확대를 야기하는 조건을 바꾸는데 노력해야 한다. TPP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통제하는 활동을 한다. TPP가 예방지향적일 때는 경찰활동은 지역 자영업자들이나 학교 선생님, 건물감독관, 복지종사자, 공무원들과 협력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순찰대상 지역사회의 상태에 대한 정보들을 모은다.

2.2.2 범죄통제

범죄통제지향적인 TPP는 기존의 범죄 문제를 통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을 바꾸는데 노력한다. Oakland 경찰서의 Beat Health Program이 대표적인 범죄통제 목적의 TPP의 예이다. Beat Health 경찰관들은 SMART(Specialized Multi-Agency Response Team)를 조직하여 마약거래문제와 관련된 자산을 조사하였다. 조사 후 집주인을 소환하여 그들 자산에 의한 마약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일상적인 행동과 활동을 바꾸도록 설득, 강제한다. 강제력은 범죄예방지향TPP보다는 범죄통제지향TPP에서 더 많다. 범죄예방지향 TPP와 달리 범죄통제 지향 TPP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무질서한 지역사회에서 집중 발생하는 범죄를 통제할 목적으로 제3자도 관찰한다[14].

2.3 TPP의 출현배경

TPP는 1980-90년대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결과이다. 그 중 특정한 사건들에 중점을 두면서 반복해서 같은 사건들을 다루는 것 대신에 이러한 반복된 사건들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는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맥락으로 문제들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정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TPP이다. 또한 90년대 후반의 사회경향인 범죄분석의 전산화, 범죄에 대한 시민 구제법 적용, 그리고 삶의 질의 중시를 수렴한 전략이다.

범죄분석의 전산화의 도입은 미국경찰전략에 새롭게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집중전략을 만들었다. 전산화는

특정 범죄만이 아닌 경찰활동의 모든 범위를 설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신고의 경향과 특정소유물에 대한 지역사회 의 불만 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 범죄를 촉진하는 장소의 조건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지향적경찰활동의 일환으로 시민구제수단으로 민법을 활용하게 되었다. 소유와 보호가 부재하거나 불충분하게 이행되어 무질서와 범죄를 야기하는 조건을 없애기 위해 시민구제수단을 법으로 적용하였다. 시민구제법의 활용으로 소유권과 보호권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1985년에 버지니아의 Newport News시를 시작으로 확대되어 캘리포니아의 Oakland시에서는 SMART팀과 플로리다의 Tampa시의 마약방지계획(Tampa anti-drug Initiatives)이 공식적으로 적용되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의 RECAP기구가 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을 중시하면서 낮은 수준의 무질서한 행동까지도 다루게 되었다. 예를 들어 소음갈등, 불법주차 등까지 다루게 되었다. 그래서 경찰은 버려진 자동차, 텅빈 건물까지 일상생활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TPP가 출현하게 되었다[15].

2.4 TPP의 과정

장소관련 문제가 확인되면 처음에 경찰은 그 장소의 관리자에게 보통 친근하게 접근한다. 경찰관은 범죄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제에 대한 연관되고 합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CPTED)에 의한 개선에 대한 제안과 같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방법들에 대해 알려준다. 그래서 소유주나 장소의 관리자들에 의해 범죄들이 제어될 수 있으며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경찰의 요구에 적대적인 경우는 처음에 협조를 구하고 그 이후에는 강제력을 행사한다. 경찰의 강제력은 다른 사람들의 신고나 도움요청에 의해 정당화 된다.

2.5 TPP의 사례

2.5.1 RECAP(Repeat Call Address Policing)

1986년에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에 개설되었다. 로렌스 셔먼(Lawrence Sherman)의해 고안된 것으로 문제지향적경찰활동을 하는 작은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엄선된 네 명의 순찰경찰관과 경사한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11대응과 분리되어 경찰서비스에 대한 신고를 줄이는 활동을 한다. 그들의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주소에서 범죄의 기초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그 주소에서 법적, 구조적, 윤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문제가 되는 장소나 건물의 소유자에게 범죄를 줄이기 위한 소유물에 대한 감시, 청소, 보수 등을 하게 한다.

RECAP전략은 이론적으로 Cohen과 Felson(1979)의 일상활동이론에 기초한다. 일상활동이론은 범죄가 동기 부여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합당한 표적(Suitable Target), 위범에 대한 유능한 보호성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ship)라는 범죄의 직접 접촉에 관한 세 가지 요소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일상활동유형의 구조변화로 범죄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는 이론이다[12].

2.5.2 Beat Health Program

캘리포니아 발레리오 경찰서의 Beat Health[16]는 전통적 범 집행을 보충하고 마약이나 갱과 관계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기관의 한 부서이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시작되었고 1995년에 발레리오에서 시행되어 전국적으로 승인된 프로그램이다.

Beat Health 자원에는 경찰기관, 범률기관, 소방기관, 건축기관, 수자원관리기관 그리고 위생기관과 특별복합상황대처팀(Specialized Multi-Agency Response Team:SMART) 등이 있다. Beat Health의 인력은 삶의 질을 향상, 촉진, 유지하기 위해 시민, 기업, 이웃, 다른 기업조합들과 회의하고 같이 활동한다. 또한 이웃감시, 이웃연합형성, 지역사회의 청소, 집주인/거주자의 교육, 화재예방, 낙서금지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마약과 범죄와 관련된 활동들의 확산으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 3가지 해결방법을 활용하였다.

2.5.2.1 마약 및 위반행위 감소법(The Drug Nuisance Abatement Act)의 활용

마약 및 위반행위 감소법은 1972년에 통과됐다. 이 법은 활용은 Beat Health Program의 주요임무이다.

모든 빌딩이나 장소가 비합법적인 판매, 사용, 저장, 관리, 제조 의 용도로 사용되면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 위반행위의 제거.
- 위반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생기는 물품에 대한 대가, 그리고 다른 이윤에 대한 제거.
- \$25,000까지의 과태료.
- 최고 1년의 기간 동안의 건물 폐쇄 또는 1년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통한 이윤 배상.
- 시에 배상하기 위해 모든 자산을 판매.

2.5.2.1 SMART(Specialized Multi-Agency Response Team)

SMART[14]는 가능한 많은 도시와 시골, 주 그리고 개인, 단체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단체들 간의 협력하는 노력은 스마트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일부 자산소유자들은 비정상적이고 거주 불가능한 장소를 딜러나 사용자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마약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세입자는 집의 결함을 무시하고, 주인은 약물과 관련된 활동을 무시하여 상호 간의 이윤 추구적 합의 활동을 한다. 스마트는 이때 자산소유자도 민법, 형법, 건축법 그리고 안전법에 따라 마약을 사용하고 파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건물과 장소들은 주위 환경에 맞게 새로 꾸며진다. 주택법과 안전법의 집행은 때때로 지역의 황폐와 마약장사에 대한 빠른 해결을 초래한다. 소유자들의 협조와 함께 소유물들(건물과 장소)을 조사, 청소, 보수할 수 있다. Beat Health의 마약 및 위반행위 감소법의 활용은 조직화된 SMART와 연결되어 있다.

III. 경찰활동에서의 TPP의 필요성

1. 경찰활동에서의 적극적인 시민참여 필요

1.1 적극적 시민참여를 위한 TPP의 필요

경찰에서 시민참여의 방안으로 시민경찰학교와 생활치안 감담회, 자율방범대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형태는 소극적이며 한정되어 있다.

시민 경찰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수료생 중 연령별에서는 40대와 5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30대에 비교하여 40-50대가 보다 안정적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 직업별에서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마찬가지로 시간적 여유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인원은 매년 거의 변화가 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극히 소수가 참여하고 있다.

생활치안 간담회의 경우도 14개의 지방청에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참석인원에 한 해에 2005년에는 경찰을 제외하면 866명, 2006년에는 13,347명이다.

시민참여 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이라 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의 경우는 2008년에 3,861개 조직에 10만 2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활동이 3-5명으로 조를 편성하여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하여 참여에 부담이 되며 한정된 시간에 활동하고 있어서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에 참여할 수 없다.

경찰활동에서의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의 생업을 하면서 경찰활동에 쉽게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여야 한다. 시민들이 업무 내에서 활동이 가능한 경찰활동이 필요하다.

2.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강제성 필요

2.1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효과성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은 사건 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1970년대 후반에 대두되었다. 사건 지향적 경찰활동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대응하였음에도 사건들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하였다. 그래서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은 반복되는 지역사회 사건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찰활동이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다른 공공기관과 사설기관 혹은 개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이 강조된다.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

스경찰서와 경찰간부연구포럼에 의해 실시된 효과성 연구에서 도심지역의 강도는 39% 감소되었고, 아파트 밀집지역 주거침입은 35%가 감소되었다. 제조공장의 외곽에서의 차량으로부터의 절도가 53%가 감소되었다. 또한 경찰관들이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문제해결기술들을 적용 가능하고 이를 통해 경찰관, 시민, 그리고 다른 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4].

2.2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을 위한 적극적 시민참여 필요

미국의 연구를 통해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국내에서도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공공기관과 사설기관 혹은 개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이 필수적이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정보제공만으로는 활동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문경찰이 직접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거나 필요시 다른 공공기관과 사설기관 혹은 개인들의 정보제공에 대한 설득 및 강제력이 필요하다.

3. Gated Community의 확산

3.1 Gated Community

게이트드 커뮤니티는 물리적 영역성 위에 거주하는 거주자들간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개념이다. 사회학에서 시작된 커뮤니티는 단순히 물리적 영역이 제한되는 주택의 영역을 의미보다는 정치적 영역성, 사회 및 경제적 영역성,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지리적 영역성을 함께 공유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합체 개념이다. 커뮤니티 내의 소속감을 강조하면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커뮤니티가 Gated Community(게이트드 커뮤니티)이다. 즉 게이트를 통한 외부인과 외부차량의 출입통제를 통하여 영역성을 확보하는 공동주택단지이다[3][7].

3.2 Gated Community의 확산

Gated Community는 도시설계가이자 연구원인 뉴먼(Oscar Newman)이 제안한 게이트가 있는 주거지역이

커뮤니티의 한 모형이다. 1800년대 뉴잉글랜드(New England)의 주거지내에 상류계층을 위해 호화주택과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거주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범죄발생도 방지하기 위해 게이트드 커뮤니티의 형태로 개발되었다. 그 후 1900년대에 본격적으로 중산층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여 현재 미국에서 개발되는 아파트 단지의 50%이상이 게이트드 커뮤니티 형태로 지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게이트드 커뮤니티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게이트 컨트롤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게이트드 커뮤니티 형태가 보편화 되었다. 1990년대 말에 지어진 대형 건설업체의 아파트들은 단지 출입부터 주동 출입까지 출입시스템을 설치하였다[3]. 최근 들어 소규모 주거지역인 원룸과 다세대 주택에도 출입시스템이 설치되고 있다. 주거단지 외에 기업에서도 사옥내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출입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이트드 커뮤니티의 확산으로 인해 건물내부나 커뮤니티 내로 외부인이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어 커뮤니티 내의 상황에 대하여 알 수 없다. 경찰 또한 순찰 시 건물이나 단지의 외부를 순찰하는 정도이다. 경찰의 접근성이 힘든 게이트드 커뮤니티 내에서는 커뮤니티 내를 관리하는 즉 아파트와 건물 등의 관리자나 소유자들의 정보제공이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IV. 적극적 시민참여를 위한 TPP의 활용방안

1. 운영과정의 메뉴얼화

TPP의 과정에서 경찰은 문제를 확인 후 문제해결을 위해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범죄를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를 설득한다. 그 이후 경찰에게 적대적이거나 활동을 거부할 경우 필요시 강제력을 행사한다.

캘리포니아의 발레이오 경찰서의 Beat Health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모든 빌딩이나 장소가 비합법적인 판매, 사용, 저장, 관리, 제도의 용도로 사용되면 관리자와 소유자에게 위반행위를 제거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이윤의 제거, \$25,000달러까지의 과태료, 건물폐쇄 및 임대이윤배상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다.

강제력 행사의 남용은 시민들에게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경찰의 이미지에 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므로 TPP의 운영과정을 매뉴얼화 하여 강제력 행사의 남용을 막고 조건이 충족될 시에만 강제력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을 배정하여 철저한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TPP를 위한 전담팀 구성

TPP 활동은 범죄가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여 원인을 해결하는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하나의 방법론적 접근이다. 그러므로 과정 중에 많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정보와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문제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그 정보와 자료 등을 정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문제발생 원인을 파악한 후에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과 단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협력을 얻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설득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TPP를 위해 각 경찰서마다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교육받으며 활동하여야 할 것이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의 RECAP의 경우 선발된 네 명의 순찰경찰관과 경사한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경찰신고가 많은 지역에서 신고의 기초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신고를 줄이는 활동을 한다.

3. 의식전환

3.1 시민들의 의식전환

TPP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민참여이다. 경찰활동은 하나의 직업인 경찰이 업무를 하는 활동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시민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활동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활동이라고 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을 하거나 범죄를 제압하기 위해 수사, 체포하는 등의 활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생활하는 건물이

나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정보를 경찰관에게 제공하고 의심스러운 상황 등을 인지하였을 때 신고하는 등의 활동도 경찰활동이라 인식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경찰활동은 경찰의 업무만이 아닌 지역사회 안전과 평화를 위해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시민 모두가 같이 하는 활동이라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식이 전환되면 앞에서 언급한 TPP의 과정에 강제력 행사보다 설득과정으로 시민참여가 활성화 될 것이다.

3.2 경찰조직의 의식전환

경찰조직 내에서도 시민들은 고객이나 감독자의 개념이 아닌 치안활동을 같이하는 하나의 조직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보제공이나 건물의 보수 및 청소 등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찰활동에서 참여를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같은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하나의 조직으로 함께 활동할 것을 설득하여야 한다.

경찰과 시민의 의식이 전환되어 지역사회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활동에서 상호협동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경찰은 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범죄와 범죄 두려움의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의식전환을 위해 시민들에게는 설득과정에서의 홍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외 홍보를 하여야 하며 경찰조직의 경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의식전환을 해야 한다.

4. 현실적인 동기부여 방안

시민참여의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TPP에서는 경찰은 강제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그 전에 설득과정이 선행하여야 한다. 강제력이 남용되면 시민의 인권침해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득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이 경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동기부여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활동에서도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자율방범대 활동의 경우 자율방

범대원이 안정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민방위의 기본교육을 면제해 주고 활동 중 사고를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였다. 또한 모범적인 시민인 경우 포상을 실시하여 경찰활동 참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시민참여활동을 위해 더 많은 동기 부여방안이 필요하다. TPP의 경우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물에 대한 보수 및 청소 등의 활동도 범죄를 예방하는 하나의 활동이다. 이럴 경우 강제적으로 보수 및 청소를 실시하게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지원금과 같은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V. 결론

범죄의 행태가 발전하면서 더 이상 경찰의 치안활동만으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에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대두되면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자율방범활동, 시민경찰활동 등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치안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참여율이 저조하여 더욱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사건 지향적 경찰활동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이 대두되면서 사건 발생하는 원인을 알기 위한 정보수집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축조되고 있는 건물은 외부인과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외부사람들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내부의 구성원이 범죄예방이나 통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는 Third Party Policing(TPP)의 활용을 강조한다. TPP는 경찰이 아닌 제3자가 범죄를 간접적으로 최소화하고 범죄발생가능성을 줄이도록 고안된 행동을 취하도록 경찰이 제3자를 설득하고 강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가 발생한 장소, 즉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장소에서 법적, 구조적, 윤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다.

우리나라에 TPP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강제력 행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운영과정의 매뉴얼화, 둘째, 전문적인 활동을 위한 TPP를 위한 전담팀 구성, 셋째,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시민참여를 동반자적 입장으로 인식하기 위한 경찰조직의 의식전환, 마지막으로 강제력까지 가지전인 설득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동기 부여 방안의 강구를 들었다.

TPP는 최근 사회의 동향에 맞는 경찰활동이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활용할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경찰의 강제력 행사에 있어 개인적, 집단적 저항의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함을 설득하여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참고 문헌

- [1] 경찰청(2006-2009), 2006-2009경찰백서
- [2] 김보환, “시민경찰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pp.224-225, 2005.
- [3] 김석경,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단지환경적 특성 및 범죄안정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
- [4] 임창호,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7권, pp.272-276, 2004.
- [5] 정덕영, “한국 경찰활동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1999.
- [6] 정윤수,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과 정책방향”, 한국정책학회, pp.89-90, 1998.
- [7] 최정민, “게이티드커뮤니티 주거단지와 그 실태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15권, 제2호, pp.99-105, 2007.
- [8] 최종술, “경찰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참여 방안”, 한국경찰학회, p.41, 2002.
- [9] 한상철, “효율적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시민참여

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2007.

- [10] Alford, Robert R, Bureaucracy and Participation, Rand McNally and Company, 1969.
- [11] J. V. Cunningham,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PAR. Vol.30, 1972.
- [12] Dennis Jay Kenney, Rebert P. McNamara, Police and Policing: contemporary issues, 2nd Political Science, p.238, 1999.
- [13] Jean-Paul Brodeur, How to Recognize Good Policing,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Washington, DC, p.102, 1998.
- [14] Lorraine Mazerolle and Janet Ransley, Third Party Polic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45-48, 2005.
- [15] Michael E. Buerger, "The Politics of Third-Party Policing", Crime Prevention Studies, Vol.9. pp.89-116, 1998.
- [16] 발레이오 경찰서 홈페이지 <http://www.ci.vallajo.ca.us/GovSite/default.asp?serviceID1=175>

저 자 소 개

김 동 복(Dong-Bok, Kim)

종신회원



- 1980년 2월 : 조선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1996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2000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찰행정법, 지방자치, 사이버범죄와 대책

김 성 환(Sung-Hwan, Kim)

정회원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사)
- 2009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석사)
- 2010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경찰 효율성, 시민참여, 경찰조직관리